

문서번호	기획예산과-3951
결재일자	2015. 3. 2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청번호	

★ ◎

성동구 기획예산과

주무관	예산팀장	기획예산과장	기획재정국장	
전지영	이정희	이윤영	03/26 김종순	
협조	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 보육가족과장	김상집 권창석 代천장식 고영희		

- 2015년도 제2회 -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

지방재정법 제32조 및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관련 조례안 제개정 사항 및 공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건에 대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자 함.

- 2015년도 제2회 -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

2015. 3.



성 동 구
[기획예산과]

1 추진 근거

-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~3, 제32조의 7
-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~제15조, 제27조

2 심의 개요

- 일 시: 2015. 3. 26.(목) 15:00
- 장 소: 8층 대회의실
- 참석 위원: 총 12명
 - 위촉직(9): 주성수(위원장) 외 8명
 - 당연직(3): 기획재정국장(부위원장), 행정관리국장, 주민생활국장
- 안 건: 총 7건
 - 보조금 관련 조례 제개정에 대한 타당성 심의: 4건
 - 공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: 3건

3 세부 심의계획

○ 심의안건: 총 7건

- 보조금 관련 조례안 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: 4건

·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

※ 보조금 관련조항: 조례안 제19조

제19조(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)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·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

※ 보조금 관련조항: 조례안 제4조

제4조(경비지원)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·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

※ 보조금 관련조항: 조례안 제19조

제19조(지원단체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·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※ 보조금 관련조항: 조례안 제19조 제2항

제19조(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)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공모에 따른 사업자 선정 심의: 3건

·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(동아리) 지원사업: 총 21개(프로그램(9), 동아리(12))

· 주민자치 특성화사업: 17개 동, 17개 사업

·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: 총 43개 단체

○ 심의기준

- 조례안: 심사표에 의거 조례안 타당성 여부 심의

· 조례의 적정성, 주민복지 증진, 사업계획, 지속 가능성 등 종합평가

- 공모사업자 선정: 사업부서 심의기준에 의거 심의

< 우선순위 >

- 법령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고, 단체 특성상 사업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
-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로서 2014년 사업실적이 우수하고, 2015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효과가 예상되는 단체

4 소요 예산

○ 위원회 수당: 총 900천 원

- 산출내역: 100,000원 X 9명 = 900천 원

- 예산과목: 기획예산과, 기획,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, 재정 및 예산분석 운영, 지방보조금 관리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

5 행정 사항

○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 ----- 감사담당관, 자치행정과, 교육지원과, 보육가족과

- 붙임 1. 2015년 제2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.(별도붙임)
2.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. 끝.